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80

발의연월일: 2022. 4. 11.

발 의 자:이정문・김병기・김철민

문진석 • 민형배 • 박상혁

박완주 • 서영석 • 신동근

이광재 • 이성만 • 이탄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여 위법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여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없어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조정사항"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을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으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조정 등) ①・② (생 략)	제23조(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	③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	
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
	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u>야 한다.</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	3
거래위원회가 제32조의3제2	
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	
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u>경우</u>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
	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u>조정사항</u>	⑦ <u>조정절차</u>
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 위원회가 제32조의3제2항에 따 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력) ①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 치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 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 <단서 삭제>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 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조정절차 따른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 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 된 사항을 이행한----.
 - ⑤ (현행과 같음)